코로나 특례대출의 상환면제에 대하여

특례종합지원자금(재대출) 을 이용하시는 분께, 면제 관련 안내가 2024년 6월 발송되었습니다.

홋카이도 사회복지협의회의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작성

누가 면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❶ 2024년도 (레이와 6년도) 의 주민세가 (균등할・소득할 모두) 비과세인 사람

*기타 조건이 있습니다

❷ 생활보호를 수급하고있는 사람

❸
- 정신보건복지수첩(1급)
- 지체장애인수첩(1급 또는 2급)
- 요육수첩(중증「A」등)

의 교부를 받고 있는 사람

❹ 고령자 세대, 장애자 세대 또는 한부모 세대 등

*상환 개시 이후 12개월분 이상 체납이 있다 + 분납 등을 하고 있지만 체납액이 증가 + 주민세의 「소득할」이 비과세되고 있는 세대.

신청서 등의 제출은 언제까지 인가요?

❶ 에 해당되는 경우 : **2024년 7월 31일 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기한이 지나더라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절차가 늦어져 일부 상환개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제 결정은 8월 이후에 수시로 공지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❷~❹ 에 해당되는 경우 : **요건에 해당되는 시점에 제출 가능.**

*단, 면제 결정의 통지는 상환 개시 이후(대부분의 경우 2025년 1월 26일 이후)가 됩니다.

기타 대출 면제 제도가 있나요?

특례 긴급 소액, 특례 종합 지원 자금（첫 회, 연장）의 상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만, 이하의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 **주민세 비과세에 의한 면제 : 2022년도 2023년도의 주민세 비과세 면제 판정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해（대부분의 경우 2025년1월） 이후 상환 계획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2024년 9월 이후, 상환 잔액 공지와 동시에 공지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생활보호, 장애수첩 등에 의한 면제 : 위의 ❷~❹ 에 해당되는 분은, 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이미 상환된 금액은 상환 면제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신청 절차에 관한 문의

홋카이도 사회복지협의회 코로나 특례사무센터

0120-540-085（수신자 부담전화）

월~금　9：00~18：00（일본어）

상환면제 요건 등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문의

개인긴급소액자금・종합지원자금 상담 콜센터

0120-46-1999（수신자 부담전화）

월~금　9：00~17：00（일본어）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나 통역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홋카이도 외국인 상담센터에 연락하여 주십시오.

011-200-9595

월~금 9:00~12:00, 13:00~17:00

영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 크메르어

***이 양식은 참고 자료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제 신청을 할 때는 우편으로 발송된 상환 면제 안내와 동봉되어 있던 일본어 신청서를 기입해 주십시오.**

（様式１―１）

긴급 소액자금 등의 특례 대출 관련 대출금 상환 면제 신청서

<差込・資金種類> 분

<社協記入欄>

※굵은 선 안을 빠짐없이 기재하십시오.

자금 종류	<差込>		
차입자 성명	<氏名・差込>		
대출금액	<金額・差込> 엔	면제 신청액	해당 자금 종류의 상환 면제 상한액
면제 신청 이유	주민세의 균등할·소득할이 모두 비과세가 되었기 때문에.		

가구 구성 ※어느 하나에☑ 표시하십시오	☐ 현재 본인(차입자)이 세대주임 ☐ 현재는 차입자 이외의 자가 세대주이며, 또한 현재의 세대주는 대출 신청 시에 차입자와는 다른 가구였음 ☐ 현재는 차입자 이외의 자가 세대주이나, DV(가정폭력)로 인해 대피하는 등 하여 세대주의 소득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음	☐ 왼쪽에서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필요 서류	①(아래 3 가지 서류가 모두 필요함) ①-1:면제 신청서(본 서류) ②-2:지금의 가구 구성원 전원이 기재된 주민표 사본(세대주의 성명·관계가 기재된 것) ③-3:**차입자**의 <差込>의 과세증명서(주민세 비과세임을 알 수 있는 것) ※주민세의 **균등할·소득할 모두** 비과세인 분이 면제 대상	②(아래 3 가지 서류가 모두 필요함) ②-1:면제 신청서(본 서류) ②-2:지금의 가구 구성원 전원이 기재된 주민표 사본(세대주의 성명·관계가 기재된 것) ②-3:**차입자 및 세대주**의 <差込>의 과세증명서(주민세 비과세임을 알 수 있는 것) ※주민세의 **균등할·소득할 모두** 비과세인 분이 면제 대상

（都道府県）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귀하

[동의 확인란] 면제 신청 시에는 아래 ①~⑥을 모두 확인한 후 동의 확인란에 체크 표시(☑)를 하십시오.

☐ ① 본 특례 제도의 상환 면제가 결정된 경우, 자립 상담 지원기관에 대해 동 기관의 업무수행 활용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② 기재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본 제도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③ 본인은 귀 사회복지협의회가 본 제도에 필요한 범위에서 전국 사회복지협의회, 타 도도부현 사회복지협의회, 시정촌 사회복지협의회, 지방자치단체, 공공직업안정소, 자립 상담 지원기관, 가계 개선 지원기관 등 관련 기관에 조회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④ 본인 및 본인 가구에는 폭력조직원이 없습니다. 본인은 귀 사회복지협의회가 필요에 따라 관공서 등에서 본인 또는 본인의 가구원에 관련된 폭력조직원 해당성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폭력조직이란 '폭력조직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단체의 구성원(그 단체의 구성단체의 구성원을 포함)이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적 불법 행위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 ⑤ 심사 결과 상환 면제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⑥ 상환 면제를 목적으로 세대주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환 면제 결정 후, 본 신청서의 기재 사항에 대해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상환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상환 면제가 취소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레이와　　년　　월　　일※본 서류를 기입한 날짜를 기입

차입자 성명(자필서명)

전화번호　　—　　—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입할 것.

※아래 항목은 신청자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	資金コード	貸付コード	受付番号	都道府県社協受付	市町村社協受付
<差込>	<差込>	<差込>		令和　年　月　日	令和　年　月　日

***이 양식은 참고 자료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제 신청을 할 때는 우편으로 발송된 상환 면제 안내와 동봉되어 있던 일본어 신청서를 기입해 주십시오.**

(様式１―２)

긴급 소액자금 등의 특례 대출 관련 대출금 상환 면제 신청서

<差込･資金種類> 분

<社協記入欄>

※굵은 선 안을 빠짐없이 기재하십시오.

차입자 성명	<氏名･差込>	
면제 신청액	긴급 소액자금 등의 특례 대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신청 이유로 대상이 되는 모든 금액	
면제 신청 이유 ① 둘 다 해당하는 경우 가장 빠른 단계에서 해당한 항목만 ☑	☐ 생활보호대상자임 ☐ 정신보건복지수첩(1 급) 또는 신체장애인수첩(1 급 또는 2 급)을 소지하고 있음	왼쪽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이 면제 대상
면제 신청 이유 ② '면제 신청 이유 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입 불필요	☐ 상환 개시 이후 12 개월분 이상의 상환 미변제액이 있음. 또한 분납·소액 변제 등을 하고 있으나, 체납금액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소득할 주민세가 비과세인 고령자만 있는 가구, 장애인 가구 또는 한부모 가구 등임.	왼쪽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 개시 이후 상환하지 못해 체납된 금액**이 면제

⇒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은 **별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생활복지자금 특례 대출에 관한 상환 면제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都道府県)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귀하

[동의 확인란] 면제 신청 시에는 아래 ①~⑥을 모두 확인한 후 동의 확인란에 체크 표시(☑)를 하십시오.

☐ ① 본 특례 제도의 상환 면제가 결정된 경우, 자립 상담 지원기관에 대해 동 기관의 업무수행 활용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② 기재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본 제도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③ 본인은 귀 사회복지협의회가 본 제도에 필요한 범위에서 전국 사회복지협의회, 타 도도부현 사회복지협의회, 시정촌 사회복지협의회, 지방자치단체, 공공직업안정소, 자립 상담 지원기관, 가계 개선 지원기관 등 관련 기관에 조회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④ 본인 및 본인 가구에는 폭력조직원이 없습니다. 본인은 귀 사회복지협의회가 필요에 따라 관공서 등에서 본인 또는 본인의 가구원에 관련된 폭력조직원 해당성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폭력조직이란 '폭력조직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 단체의 구성원(그 단체의 구성단체의 구성원을 포함)이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적 불법 행위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 ⑤ 심사 결과 상환 면제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 ⑥ 상환 면제를 목적으로 세대주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환 면제 결정 후, 본 신청서의 기재 사항에 대해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상환 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상환 면제가 취소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레이와 　　년 　　월 　　일※본 서류를 기입한 날짜를 기입

차입자 성명(자필서명)

전화번호 　　— 　　—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입할 것.

※아래 항목은 신청자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	資金コード	貸付コード	受付番号	都道府県社協受付	市町村社協受付
<差込>	<差込>	<差込>		令和 年 月 日	令和 年 月 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특례 조치
'긴급 소액자금 등의 특례 대출' 상환 면제 안내

상환 면제 포인트

■ 상환 면제는 자금의 종류별로 일괄 실시됩니다.
①긴급 소액자금, ②종합 지원자금의 최초 대출액, ③종합 지원자금의 연장 대출액, ④종합 지원자금의 재대출입니다.

■ 채무자와 세대주가 주민세 비과세(균등할, 소득할 모두) 대상자면 상환 면제 대상이 됩니다. 기타 세대원의 과세상황은 따지지 않습니다(※면제가 결정된 시점에서 이미 상환된 금액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

■ 면제 조건 등은 자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 참고)

■ **위 이외에도 판정연도 이후에 채무자 및 세대주가 주민세 비과세 대상자가 된 경우, 남은 대출액이 일괄 면제됩니다. 또 상환 중에 채무자의 사망, 실종 선고, 개인파산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 면제를 받으려면 신청이 필요합니다** (※대상자라도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통지문을 확인한 후 기한 내에 신청해주십시오.
이사 등으로 **신청 시와 주소가 변경된 경우, 대출 신청을 한 사회복지협의회로 연락해주십시오.**

면제 조건과 면제 상한액

자금 종류	면제 조건	면제 상한액	상환 개시 시기 ※면제가 되지 않는 경우 등
긴급 소액자금 2022년 3월 말까지의 신청분	2021년도 또는 2022년도에 **주민세 비과세**	20만엔	**2023년 1월~**
긴급 소액자금 2022년 4월 이후의 신청분	2023년도에 **주민세 비과세**	20만엔	**2024년 1월~**
종합 지원자금(최초 대출분) 2022년 3월 말까지의 신청분	2021년도 또는 2022년도에 **주민세 비과세**	45만엔(1인 가구) 60만엔(2인 이상 가구)	**2023년 1월~**
종합 지원자금(최초 대출분) 2022년 4월 이후의 신청분	2023년도에 **주민세 비과세**	45만엔(1인 가구) 60만엔(2인 이상 가구)	**2024년 1월~**
종합 지원자금(연장 대출분)	2023년도에 **주민세 비과세**	45만엔(1인 가구) 60만엔(2인 이상 가구)	**2024년 1월~**
종합 지원자금(재대출)	2024년도에 **주민세 비과세**	45만엔(1인 가구) 60만엔(2인 이상 가구)	**2025년 1월~**

※1 2022년 4월 이후의 긴급 소액자금, 종합 지원자금(최초 대출)의 특례 대출 신청분은 2023년도의 주민세 비과세를 기준으로 상환 면제 판정이 내려지며, 거치 기간은 2023년 12월 말까지입니다.

※2 상환 면제 후에도 자립상담지원기관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3 채무자의 희망에 따라 거치 기간을 짧게 설정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환할 필요가 있으나 상환이 어려운 분은 뒷면의 관계기관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위한 관계기관 안내

취업, 가계 등의 지원

함께 가계를 재검토하고 수입·지출 상황을 개선하는 서비스, 채무정리 서비스 이외에도 헬로워크(공공직업안정소) 등과 연계해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대상자】 수입이나 생계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분

주요 상담창구	지원 내용
자립상담지원기관	가계 개선 지원사업 등 생활 전반의 어려움을 상담해드립니다. https://minna-tunagaru.jp/ichiran/
헬로워크 (공공직업안정소)	일자리 상담, 소개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 직업 훈련 등을 지원합니다. https://jsite.mhlw.go.jp/hokkaido-hellowork/list.html

자립상담지원기관 목록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헬로워크 목록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다중 채무 및 법률 관련 상담

법률 전문가의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채무 정리(개인회생, 개인파산 등)를 도와드립니다.

【이용대상자】 특례 대출 이외의 채무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주요 상담창구	전화	지원 내용
소비자 핫라인 (소비생활 상담창구)	188	소비자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는 가까운 소비생활 상담창구를 안내해드립니다.
일본사법지원센터 (법 테라스·서포트 다이얼)	0570-078374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대신 지급 제도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일본변호사연합회 (해바라기 고민 상담 110번)	0570-783-110	가까운 변호사회 상담센터로 연결해서 상담 예약 등을 도와드립니다.
법무사 종합상담센터	가까운 법무사 종합상담센터에서 과오납 유무 확인 등에 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hiho-shoshi.or.jp/activity/consultation/center_list/	
다중 채무 상담창구	금융청 홈페이지에서 다중 채무 상담창구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fsa.go.jp/soudan/	

법무사 종합상담센터 목록
(일본 법무사회 연합회
홈페이지)

다중 채무 상담창구 목록
(금융청 홈페이지)

상환 관련 상담

상환 중인 상환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 등도 있습니다.
또한, 지원받을 수 있는 관계기관과 연결해드립니다.

【이용대상자】 상환 면제 대상자는 아니지만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상담창구】 거주하는 도도부현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도부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발송한 면제 안내문,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해주십시오.

【기타 문의】 생활복지자금 대출 상담 콜센터

0120-46-1999 (9: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